



(사)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간

## 상호협력협약서



(사)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(이하“문화재보존과학회”라 한다)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(이하 “한원(연) 방사선과학연구소”라 한다)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학 기술개발 및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이 협약은 한원(연) 방사선과학연구소와 문화재보존과학회 간 제3조의 협력 분야에 관한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본운영원칙)** ① 양 당사자는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3조 (협력분야)** 이 협약에 의한 양 당사자의 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재의 안정성 확보, 진단 및 보존처리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방사선 분석 기법
2. 문화재의 방사선 분석 결과를 이용한 공동 연구 및 학술발표
3. 양 당사자의 실험분석 및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보다 나은 연구 활동과 결과 도출을 유도
4.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부대 및 연계 기술 분야

**제4조 (협력방법)** 이 협약에 의한 양 당사자의 상호 협력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동 연구
2. 인력 교류
3. 학술, 기술 및 정보 교류
4. 연구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

5. 기타 양 당사자가 협력하기로 합의한 방법

**제5조 (공동 연구)** ① 양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연구 사업에 참여하거나 연구 사업의 일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② 양 당사자는 상호 관심 분야의 연구 사업을 함께 도출·기획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, 공동 연구의 형태 및 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6조 (인력 교류)** ①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상대방의 인력을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으며, 그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인력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교류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부담 및 지급 기준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7조 (학술, 기술 및 정보 교류)** 양 당사자는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분야와 관련된 학술, 기술 및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하여 협조한다.

**제8조 (연구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)** ① 양 당사자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를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② 제 1항의 이용 절차 및 사용료 등은 소유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**제9조 (연구결과물의 소유)** ① 이 협약 이전에 각 당사자의 연구개발 결과로 발생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각 당사자의 소유로 한다.

② 양 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(상대방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형태 포함) 연구결과물(연구기자재,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포함, 이하 동일)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공동연구 과제의 관련 규정 및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,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10조 (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)**

① 양 당사자는 자료, 문서 및 인력 등을 교류할 때에 상대방의

지식재산권의 비밀을 보호하며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
② 양 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한 협력 결과로 발생한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또는 양도,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료, 판권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실시한다.

#### **제11조 (비밀유지)**

① 양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, 자료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하면 아니 된다.

#### **제12조 (비용부담)**

이 협약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세부 필요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.

#### **제13조 (변경)**

이 협약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#### **제14조 (효력 및 협약기간)**

① 이 협약은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 5년 경과 후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1년 주기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 1항의 효력이란 이 협약 체결이 상호간의 법적, 재정적 권리의무 창출 또는 발생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
이 협약서가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및 서명하여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8월 28일

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 
(사)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

회장 한 경 순

---

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 
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

소장 임 인 철

---